##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 발 신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공익법단체 두루 이한재 02-6200-1679, leehj@duroo.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sjkang@hopeandlaw.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010-2533-1807, kangj@kpil 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010-4150-4347, chaewan.s@minbyun.or.kr)
- 제 목 [보도협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2024. 7. 31.(수) 11:00, 소통관
- 날 짜 2024. 07. 31. (총 10쪽 첨부 문서 제외)

##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7. 31.(수) 11:00, 국회 소통관

1.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7월 26일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10일-11일 양일간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진행된 심의의 결과물인 본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권고들을 담고 있습니다.

- 2. 이번 최종견해에 포함된 주요 권고로 ▲고문 범죄화 및 시효 배제, ▲구금 초기단계부터의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인권위원 임명 절차 개선, ▲ 과밀수용 개선, ▲ 수용자 의료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군대 내 폭력 근절, ▲군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권리보장,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권리의 보장,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보장, ▲이주구금 제도개선 및 아동구금 금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 ▲젠더 기반 폭력의 사법조치 강화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보장 등이 있습니다(첨부1. 참조)
- 3. 26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대응모임")은 2024. 7. 31.(수) 11:00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종견해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과 남인순(더불어민주당 10.29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은정(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장식(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서왕진(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준형(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정혜경(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당대표), 한창민(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 4. 기자회견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덕진 활동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대한민국 심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번 심의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첫 발언자인 **강지윤 제6차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심의대응 NGO 대표단 단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당사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게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과 성실히 협의하고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의원**이 2024 .7. 30.(화)에 대표 발의한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소개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재차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문방지협약 심의에 직접 참여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직접 증언한 과거사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손석주 영화숙 재생원 생존피해자협의회 대표는 "60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는 받지 못했던 위로와 지지를 고문방지위원회 두 위원으로부터 받았다"라며 진화위가 내년 5월 종료되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손석주 대표는 "정부가, 국회가 지체하는 동안 피해자는 억울함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는 이번 심의가 "낯설고 먼 길이어서 두려웠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이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녀왔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시설수용이 고문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경인 활동가는 시설수용 피해를 겪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렵게 목소리 낸 우리 탈시설 장애인들을 한국 사회가 기억해달라며, 더이상 피해자가 없는 사회로 바꾸는데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의 발언 이후에는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활동가들이 이번 최종견해에서 발표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사항과 권고를 낭독했습니다(붙임4 참조). 5. 이번 심의과정에서 연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네바 현지에서 NGO브리핑과 고문생존자 증언대회 등을 개최한 대응모임은 향후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 입법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피해생존자 발언문

첨부1.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영문/ 비공식 국문)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4.9통일평화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법단체두루,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노란들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총 26개 단체)

####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 ● 공동주최

-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26개단체)
- 국회의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10.29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김준형(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박은정(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신장식(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 서왕진(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 정혜경(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용혜인(기본소득당 당대표)
  - 한창민(사회민주당 당대표)

#### • 일시

2024. 7. 31.(수) 11:00

####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 순서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사회)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경과
- 강지윤 제6차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심의 대응 NGO 대표단 단장
  -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핵심내용 해설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소개
- 손석주 영화숙 재생원 생존피해자협의회 대표
  - 생존피해자 증언
-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 생존피해자 증언
- 참석 국회의원, 활동가 전원
  - 최종견해(권고) 이행 촉구선언문 낭독

#### ■ 붙임2.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2024년 7월 26일(금),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아래 "협약") 제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되었다. 이번 최종견해는 협약에서 금지하는 고문과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과 관련된 광범위한 국내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제시한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협약상 고문의 정의 국내법 통합, 시효의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과밀수용 개선, 장기간 금치징벌 금지,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 등 과거 심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권고하었다. 2017년 대한민국 제3-5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도 참석했었던 한 위원은 지난 7년간 이러한 권고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당사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이번 최종견해에 최근 국내 현안과 관련된 권고들이 다수 담긴 것 역시 주목해야한다. 위원회는 군대 내 고문, 학대 및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 혐의자와 제도적이나위계적 연관성이 없는 독립기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직접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휘체계에 있는 자'의 책임도 규명하여 사법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채 상병 사망사건', '훈련병 사망사건' 등 최근 군대 내 학대, 사망사건의 수사의 독립성 문제와지휘책임자의 책임 규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현재위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위원 임명을 위한 투명하고참여적인 절차를 법률로 보장할 것을권고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견해'의 문제로 격하하지 않고, 국제인권규범을 포함한 '인권'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해결해야 한다.

위원회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처우 및 제도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권고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대로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여 낮은 난민인정률을 높이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불회부 사유'를 전면 삭제하는 등 부실한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 구금 역시 합리적인 구금의 상한 설정, 구금에 대한 독립적 사법 심사 보장,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미구금 원칙 마련 등 인권에 기반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위원회가 새롭게 주목한 의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성실히 검토하고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기존 질의와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과거사 및 시설 수용 피해자 구제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는 물론, 과거사 및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폐쇄형 시설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배상, 재활 등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과거사 및 시설 수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구제와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위원회의 포괄적이고 시의 적절한 권고를 환영하고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참히 짓밟혔던 현대사의 비극을 반성하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자 국가 간의 약속이다.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약 심의에서도 위원회의 지난 권고 이행이 불가하다는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였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권고의 실효적인 이행은 요원하다. 정부는 이번 최종견해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과 성실히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라.

#### 2024.7.31.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 ■ 붙임3. 피해생존자 발언문

#### • 손석주(영화숙 재생원 생존피해자협의회 대표)

안녕하세요. 영화숙재생원 생존자 피해자협의회 대표 손석주입니다.

저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를 대표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해외로 나가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네바에서 두명의 유엔 고문방지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악몽같은 제 경험을 전했습니다. 죽기전에 피해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저에게 진지하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피해자를 위한 진실규명과 보상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정작 60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는 받지 못했던 위로와 지지를 두 위원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두 위원은 저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과거사와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구제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진정을 접수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접수를 받지 않는 진화위에 피해자들은 진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진화위는 내년 5월에 종료 됩니다.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피해자들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가 지체하는 동안 피해자는 억울함을 품은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박경인(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탈시설 당사자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6차 대한민국 심의가 열린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낯설고 먼 길이어서 두려웠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이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서울시는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저는 이런 상황에 위기감과 두려움을 많이 느꼈고, 국제사회에 한국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간 제네바에서 저는 고문방지위원회 케싱 위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에서 살아온 경험에 따르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일수록 시설이 더 위험합니다. 자기 말을 못하는 사람은 폭력을 고발하기 어려워서 더폭력을 당하기 쉽습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시설 조사만으로는 그 폭력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 단체가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설 자체를 없애야만합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케싱 위원은 '당연하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시설수용이 고문의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또한 추모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법도 바꾸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너무나당연한 말인데 한국 정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수용 피해를 겪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목소리 낸 우리 탈시설 장애인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우리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피해와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낸 용기를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는 사회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말하는 추모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또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함께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1\*에 대한 최종견해

1. 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과 11일에 개최된 제2113차 및 제2116차회의<sup>2</sup>에서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sup>3</sup>를 심의하고, 2024년 7월 19일에 개최된 제2127차회의에서 본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 A. 소개

- 2. 위원회는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 보고서 검토 및 대표단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식보고절차를 수락하고 이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에 감사를 표한다.
- 3.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정기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제기된 질문과 우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 B. 긍정적 측면

- 4. 위원회는 다음 문서의 당사국의 비준을 환영한다:
  - (a) 2023년 1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b) 2022년 12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c) 2021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의 1930년 강제근로협약(제29호).
- 5. 위원회는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 협약과 관련된 분야의 법률을 개정하고 도입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 (a)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4월.
  - (b)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 (c)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sup>1\*</sup>위원회가 제80차 회의(2024년 7월 8~16일)에서 채택.

<sup>&</sup>lt;sup>2</sup> CAT/C/SR.2113 및 CAT/C/SR.2116 참조.

<sup>&</sup>lt;sup>3</sup> CAT/C/KOR/6.

- (d) 2020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범죄 현장대응 강화;
  - (e)군인사관리법 개정으로 2020년 '위수지역 구금' 제도 폐지;
- (f)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도록 2020년 민법 개정;
- (g)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도록 2021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6. 또한 위원회는 인권 보호를 개선하고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 당사국이 정책과 절차를 개정하기 위해 취한 노력을 환영한다:
  - (a) 2019년 변호인의 방청권 강화를 위한 계획 채택;
- (b) 2020년에 물대포 사용을 제한하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채택;
  - (c) 2024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채택;
- (d) 2024년에 국가 폭력, 적대 세력,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

#### C.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 이전 보고 주기에서 보류 중인 후속조치 사항

7. 위원회는 제3-5차 당사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백남기 농민사망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청의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절차의 결과, 남아있는 "대용감방" 폐쇄 및 군인권보호관 사무소 설립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했다. 4 2016년 12월 9일에 당사국이제출한 답변, 5 당사국의 제6차 정기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및 대화 중 대표단이제공한 추가 정보에 비추어,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의 14 (d) 및 (e) 항, 26 및 36 (b)항에 명시된 권고가 이행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 고문의 정의 및 범죄화

8. 위원회는 고문 행위가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해당한다는 대표단의 설명을 인지하지만, 고문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sup>&</sup>lt;sup>4</sup> CAT/C/KOR/CO/3-5/Add.1.

<sup>&</sup>lt;sup>5</sup> CAT/C/KOR/CO/3-5, 8항.

범죄로서 아직 국내법에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형법은 고문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완전하고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가해지는 고문도 다루고 있지 않다. 위원회는 또한 신체적 상해와 사망을 초래하는 '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이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제1조 및 제4조).

- 9. 위원회는 이전 권고<sup>6</sup>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다음을 이행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 (a) 고문을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과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가해지는 고문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협약 제1조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고문의 정의를 형법에 통합해야 한다.
- (b)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문 행위가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 시효

- 10. 위원회는 살인죄와 중대한 범죄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일부 고문 행위에는 7년이라는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 11. 위원회는 당사국이 어떠한 고문 행위도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 근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12. 법률 조력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근 조치들을 주목하면서도,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권리가 "정당한 사유" 등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근거로 제한될 수 있어 검찰과 경찰이 변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구금자가 구금 초기부터 의사로부터의 진찰을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없을 수 있으며, 의사들이 고문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상에 대한 의료 보고서를 검찰에 직접적이고 비밀리에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소년 구금시설의 심문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영상 및 음성 녹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제2조).

<sup>&</sup>lt;sup>6</sup> CCPR/C/KOR/CO/5, para. 35.

<sup>&</sup>lt;sup>7</sup> CCPR/C/KOR/CO/5, para. 35.

13.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구금 사유에 관계없이 구금 초기부터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법적,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체없는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 해당 의사가 명시적으로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관과 교도소 직원의 감시 없이 독립적인 혹은 본인이 선택한 의사로부터 무상 의료 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 고문 또는 가혹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상에 대한 의료 보고서를 검찰에 즉시, 직접, 비밀리에 제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소년 구금시설의 심문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심문의 영상 및 음성 녹화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심문이 적절하게 녹화되며, 영상 녹화물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제공되고, 협약 위반 사항을 식별 및조사하기 위해 검토되며, 관련된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

14.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환영하는 한편, 관련 법률이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위원회 위원 선정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관찰한다. 또한 위원회의 임무에 대한 설명이 당사국이 비준하지 않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제2조, 11조 및 16조)에 명시된 국가 예방 메커니즘의 임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모든 자유 박탈 장소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권한이 없고, 예고 없는 방문을 수행할 수 없으며, 증인 없이 자유 박탈된 사람과의비공개 면담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15. 당사국은,

- (a) 인권 중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다양성 및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및 임명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b) 위원회에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폐쇄형 기관을 포함한 모든 자유 박탈 장소에 대한 예고 없는 방문을 수행하고 증인 없이 자유 박탈자와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인권위의 감시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c) 가능한 한 빨리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구금의 조건

16. 위원회는 구금장소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교정시설의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즉 진행 중인 건설 및 개보수 프로젝트, 가석방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급여와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한 조치, 그리고 원격 화상 진료와 외부 의료지원의 이용이 늘어난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a)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도소 수용률이 113%에 이르는 과밀상태의 지속;
- (b) 다인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 면적(수감자 당 2.58제곱미터)의 국제 기준 미달;
- (c) 징계 조치로서 독방 구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최대 45일에 이르는 장기간의 독방 구금, 최근 취해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의료인력이 독방 구금을 매일 모니터링하지 않는 점;
- (d) 몇몇 구금 중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기도 한, 정신보건의료를 포함한 시의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
- (e) 구금 중 사망 사건들에서 유족에게 부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부검 결과를 통보하는 관행;
- (f) 구금 중 사망과 고문 및 학대 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독립 기구의 부재(제2조, 제11조 및 제16조).
- 17. 당사국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에 부합하는 구금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다음에 따라야한다.
- (a)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의 과밀화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는 구금의 대안을 더 활용하고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 인프라의 개발 및 개조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비구금 조치에 관한 최소기준 규칙(도쿄 규칙)과 여성 재소자 처우 및 여성 피의자 비구금 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 (b) 다인실을 포함하여 수용자 1인당 최소 생활 공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c) 독방 감금에 관한 법률과 관행을 국제 기준, 특히 넬슨 만델라 규칙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독방 감금을 넬슨 만델라 규칙 제45조 1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성인의 경우어따한 경우에도 연속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하고, 독립 심사의 대상으로 하며, 관할 기관의 허가에만 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의 상태가 독방 감금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면 넬슨 만델라 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치의 부과를 금해야 한다.
- (d) 수용자에게 정신보건을 포함한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의료 인력을 포함하여 충분한 자원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e) 구금 중의 모든 폭력, 과도한 유형력 사용과 사망 사건은 가해가 의심되는 사람과 기관상·위계상 관련이 없는 독립 기구를 통해 철저히 조사되도록 보장하고, 책임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f) 구금 중인 사망에 관한 독립적인 법의학 검사를 보장하고, 사망자의 친족에게 부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사설 부검 의뢰를 허용해야 한다.

#### 국가 보안법

- 18. 위원회는 '반정부단체'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찬양' 및 '고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이 본 협약 위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 특히 이러한 조항(제2조, 제11조 및 제15-16조)에 따라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되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 19.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sup>8</sup>를 상기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등"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포함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동법이 협약에 부합하고 동법에 따른 체포 및 구금이 당사국의 인권 의무에 부합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사형

- 20. 위원회는 이전의 최종견해<sup>9</sup>를 상기하고 자유권위원회<sup>10</sup>의 우려에 공감하며, 1997년 이후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사형제 모라토리움을 인지하지만, 법원이 사형을 계속 선고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형수가 남아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제2조 및 제16조).
- 21. 위원회는 당사국을 다음과 같이 초청한다.
- (a) 사형제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과 사형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 (b) 모든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과거 사형수였던 수용자도 다른 모든 수용자와 동일한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며, 국제 기준에 따라 기본 권리와 필요를 보장해야 한다.

고문 혐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및 진정 제도

<sup>&</sup>lt;sup>8</sup> CAT/C/KOR/CO/3-5, para. 16.

<sup>&</sup>lt;sup>9</sup> CAT/C/KOR/CO/3-5, para. 30.

<sup>&</sup>lt;sup>10</sup> CCPR/C/KOR/CO/5, 23항.

22.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만, 구금시설에 구금된 모든 사람이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다른 우려 사항은 인권센터에 등록된 진정 건수가 적어 그 효과와 신속성에 대한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을 통해제기되는 진정 건수는 많지만, 진정 접수와 그에 따른 조사, 기소 또는 구제 조치의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관찰한다(제2조, 11-14조 및 16조).

#### 23. 당사국은,

- (a) 경찰 구금 시설과 교도소를 포함한 모든 구금 장소에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 가능한 진정 제도를 구축하고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 중인 및 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
- (b) 모든 구금 시설에서 기존의 진정 제도를 강화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진정인이 진정으로 인한 협박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c)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든 진정이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해당 기관의 조사관과 가해 혐의자 사이에 제도적 또는 위계적 관계가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 (d) 고문 또는 학대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마다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고문 및 학대 행위의 경우 가해혐의자는 조사 기간 동안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고문 및 학대 행위의 가해 혐의자 및 그러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용인한 지휘책임자는 정식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될경우 그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에게 구제를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e) 수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면담 원칙(멘데스 원칙)을 포함한 비강압적 면담 및 수사 기법에 대한 경찰관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선진 수사 도구를 도입하고 법의학 증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f) 공무원에 대한 고문, 학대, 과도한 무력 사용 및 강압 수단 적용에 대해 접수된 모든 진정 및 신고와 관련된 종합적인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진정이 조사로 이어졌는지, 조사로 이어졌다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는지, 조사 결과 징계 또는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구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 교육

24. 위원회는 의료 종사자, 법집행공무원, 출입국관리 공무원, 군대 및 사법부에 제공되는 고문 금지 교육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이스탄불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부족함에 유감을 표한다(제10조).

#### 25. 당사국은,

- (a) 모든 공무원, 특히 법집행공무원, 군인, 법원 공무원, 교도관 및 기타모든 형태의 체포, 구금 또는 수감 대상자의 감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여될 수 있는 사람들이 협약의 내용, 특히 고문의 절대적 금지에 대해 잘 숙지하고, 협약 위반은 용납되지 않고 조사될 것이며 책임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절히 처벌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의무적인 초기 및 재직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 (b)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직원이 개정된 이스탄불 의정서에 따라고문 및 학대 사례를 식별하고 보고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c) 고문 및 학대 사례를 줄이고, 그러한 행위의 식별, 기록 및 조사, 책임자 기소를 보장하는 데 있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 군대 내 폭력

- 26. 군대 내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위원회는 자살을 포함한 사망을 초래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군대 내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동성 성인 간의합의된 성적 관계를 범죄화하고 이를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2년 이하의노역형"에 처하는 관련 처벌이 협약(제2조 및 제16조)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점에 우려를 표한다.
- 27. 위원회는 이전 권고<sup>11</sup>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군대 내 자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준의 압박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와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모니터링, 문서화, 조사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 (b)고문 및 가혹 행위 혐의와 자살을 포함한 모든 사망 사건이 가해 혐의자와 제도적 또는 위계적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철저히 조사되도록 보장하고, 직접적인 가해자와 지휘 체계에 있는 자의 책임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 (c) 군형법 제92의6조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

<sup>&</sup>lt;sup>11</sup> CAT/C/KOR/CO/3-5, para. 36.

#### 정신 의료 기관 비자의 입원

- 28. 위원회는 보고 기간 동안 비자발적 입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주목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 (a) 자, 타해 위협을 하지 않는 다수의 정신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비자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동의 입원' 제도에 따라 입원했다가 법정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여 '법정 보호자에 의한 입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후 퇴원이 거부되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 (b) 정신의료기관 비자발 입원 관련 절차적 안전장치가 불충분하고 부적절하다.
- (c) 입원을 검토하는 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및 자원이 부족하고, 환자 대면면당 없이 대부분의 사례가 결정되는 관행이 있다.
-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 병원 내 학대 관련 진정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하다.

#### 29. 당사국은,

- (a)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고문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존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비자발적 입원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 (b) '동의 입원 심사' 제도를 개정하여 입원 심사를 위한 대면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 (c) 정신의료기관 내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 가능한 불만 제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내 모든 학대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대 혐의가 있는 사람을 기소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 및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 (d) 지역사회에서 재활 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

30.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시보호' 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었지만, 동 법에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모두 수용하여 강제송환을 방지하겠다는 대표단의 약속에 주목하면서, 검토 대상 기간 동안 송환된 사례에 주목한다(제2조, 제3조 및 제16조).

#### 31. 당사국은,

- (a) 북한이탈주민의 자유 박탈은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b)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건강권, 효과적인 독립적 검토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적 법적 보호 장치를 보장하고, 실제로 이러한 보호 장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c) 모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협약 제3조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지 여부 또는 진정성 이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탈북 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난민신청자와 이주민

32.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할당한 추가 자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의 낮은 난민 인정률과,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많은 사례("불회부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3월 23일 결정에 주목하며, 이주 구금에 대한 법적 상한이 여전히 부재함에 우려한다. 또한, 자의적인 이주 구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하며, 아동의 이주 구금이 이루어지는 관행,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필수적인 건강 및 기초적인 지원에 접근이 어렵다는 데에도 우려한다 (제2-3조, 11-13, 16조).

#### 33. 당사국은,

- (a) 난민인정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에 추가 자원을 배정하고, 불인정 결정과 관련하여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이의 신청 절차를를 마련하며 이의 정지효력을 보장해야 한다.
- (b)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불회부 사유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해야 한다.
- (c)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이주 구금의 상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주 구금이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d) 이주 아동의 구금을 금하고 미동반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비구금적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 (e)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취업 허가와 필수적인 의료 건강 서비스, 기초 생활 지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인신매매

- 34. 2021년 4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이 법의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와 형법에 규정된 관련처벌이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 35.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정의와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러한 조항과 그 이행이 국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젠더 기반 폭력

- 36.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등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과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다른 종류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당사국의 조치를 확인하며,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
- (a)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고소 건수, 낮은 기소율 및 유죄 판결의 비율, 관대한 형량
- (b)별도로 처벌 가능한 범죄로 부부 강간을 포함하지 않은 「형법」 $^{12}$  등 법률의 부재 (제 $^{2}$ 조, 제 $^{16}$ 조).

#### 37. 당사국은,

- (a) 가정 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 폭력 사건, 특히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당국 또는 기타 기관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폭력이 신고되고, 철저히 조사되며,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적절한 제재와 함께 처벌되며, 생존자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b)생존자와/ 또는 그 가족이 보호와 지원을 받고, 필요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구제, 재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전국 어디서도 충분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c)배우자 사이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정의되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적정한 처벌이 따르는 구체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구제

<sup>&</sup>lt;sup>12</sup> CAT/C/KOR/CO/3-5, para. 37

38. 위원회는 과거 국가 폭력과 시설 수용 피해자들 중 극소수만이 보상과 재활을 포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많은 전(前) 일본군 '위안부'<sup>13</sup> 피해자가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 연령 및 취약성으로 인해 여전히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상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협약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3호(2012)에 설명되어 있는 당사국들이 고문 피해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제2, 23-24, 16조)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 39. 당사국은,

- (a)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 복지 시설, 고아원, 기타 폐쇄형 시설의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 국가 폭력과 시설 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제기 없이도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b)모든 전(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 (c)법적, 실질적으로 고문 및 가혹 행위의 모든 피해자가 협약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와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비롯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당사국은 법원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이 명령하고 고문 및 가혹 행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재활 수단을 포함한 구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공하라.

#### 후속 절차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25년 7월 26일까지 기본적 법적 보호조치, 독방 감금, 정신건강 관리를 포함한 수감자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 군대 내 고문 및 학대혐의, 자살을 포함한 사망 사례에 대한 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단락 13, 17, 18, 19 참조). 13, 17 (c), 17 (d) 및 27 (b)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다음 보고 기간 내에 본 최종견해의 나머지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 기타 문제

41.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본 최종견해를 적절한 언어로 공식 웹사이트, 언론 및 비정부기구를 통해 널리 배포하고, 그 배포 활동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sup>&</sup>lt;sup>13</sup> A/HRC/54/24/Add.1, and CEDAW/C/KOR/CO/9 para. 30 (a).

42. 위원회는 당사국에 제7차 정기보고서를 2028년 7월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이 간소화된 보고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보고에 앞서 당사국에게 쟁점 목록을 전송할 예정이다. 해당 쟁점 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은 협약 제19조에 따른 일곱 번째 정기보고를 구성하게 된다.

13